

강원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3. 5. 규칙 제1280호 개정 2019. 11. 18. 규칙 제1737호
개정 2017. 3. 14. 규칙 제1575호
개정 2017. 8. 31. 규칙 제16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동의 실질적 기반 구축과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강원대학교 교원의 창업 및 참여를 촉진하고, 그 신청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창업'이라 함은 전임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교내·외에서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18.)
2. '창업교원'이라 함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18.)
3. '창업겸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휴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창업기간'이라 함은 교원이 교원창업을 하고자 창업겸직 및 창업휴직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6. '대학 투입분'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되는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자금지원 등을 말한다.
7.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은 창업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제4조(구성) ①교원창업 및 창업관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의해 구성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가 겸하되,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창업교원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창업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기술이전팀장이 된다.

⑤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창업과 관련한 대학의 기본방침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원창업 기업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원창업에 따른 대학 투입분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교원창업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창업 및 교원창업 기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창업교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운영관리)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 운영을 포함하여 교원창업에 대한 사전·사후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교원창업 절차

제8조(자격조건) 교원창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강원대학교에 2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9조(신청) 창업을 하려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교원창업을 신청한다.

1. 창업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3. 창업겸·휴직 승인 요청서(서식 3)
4. 창업겸직동의서(서식 4)
5.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서식 5)
6.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제조업의 경우)(서식 6)
7. 기타 참고 서류(벤처기업확인서 등)

제10조(창업심의) ①위원회는 창업신청서류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학부(과)장과 학장 및 해당 창업 신청 교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15일 이내에 교원창업 승인여부를 창업 신청 교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11조(협약체결)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

1. 교원창업 관련 기술 제공
2. 교원창업 활동에 필요한 대학 투입분 내역
3. 대학 투입분에 대한 보상 방법
4.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2조(창업겸·휴직) ①창업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창업겸직 또는 창업휴직을 한다.

②창업기간은 창업교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사임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8.31.)

③창업교원의 창업겸직 허가기간은 1회당 3년 이내로 한다.

④창업교원의 창업휴직 허가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14.)

⑤교원창업에 따른 창업휴직인원은 학부(과)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창업겸·휴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창업겸·휴직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⑦창업교원은 창업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기업설립 등) ①창업교원은 법인설립등기(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창업교원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기업의 업무를 개시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창업기업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창업기업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교원창업을 교내에서 한 경우에는 창업기간이 만료된 후 교외로 창업기업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4장 창업교원의 의무와 창업기업 관리

제14조(소속 부서 업무공백 보완) 제3조에 따라 창업교원은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의한 교원의 책임시간을 준수하고,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창업기업은 공간 또는 시설의 사용대가 등을 대학이 요구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동사항 보고) 창업교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 등 창업기업 및 창업교원에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창업기업 평가) ①위원회는 창업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창업활동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②창업교원은 당해 창업기업의 연간 운영보고서를 다음 해 4월말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연간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1부

2. 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제18조(창업승인 취소) ①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원창업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서류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간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창업기업 평가 결과 교원창업 활동이 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대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창업 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창업교원이 스스로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창업교원의 소속 부서장은 창업교원이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 교원과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창업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승인이 취소된 창업교원은 창업기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 중지 및 사업장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19조(공동 교원창업) 2인 이상의 교원이 공동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할 시, 창업기업은 1개의 교원창업 기업으로 간주한다.

제20조(발명자 실시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 발명자가 동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교원창업을 하는 경우 최소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이전계약은 별도 체결한다.

제21조(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 ① 창업교원은 교원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에 일정부분의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당시 등기부등본상의 발행 주식 5% 납부 또는 매년 매출액의 1%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4.>

부 칙(2012. 3. 5. 규칙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원창업은 이 규정에 따라 창업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 이전의 창업교원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신고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창업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8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17. 3. 14. 규칙 제157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31. 규칙 제160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18. 규칙 제17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교원창업 신청서

창업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창업관련 활동자(교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회 사 개 요	회사명					
	사업장주소					
	설립일 (예정일)		()	주생산품		
	자본금		_____만원	총발행주식		___주, 액면가 : _____원
	설립형태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전환계획 기재)			
주요주주 및 경영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차입금/담보		거래은행		대출과목		
		담보내용		차입금		
첨부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창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학장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 사 명
(예 비 창 업 자)

1. 창업목적 · 동기 및 (창업)회사개요

창 업 목 적 · 동 기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예 정) 일			상시 근로자수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소유, 임대)	
사 업 장				(소유, 임대)	
업 종			주 제 품		
관계회사			자 본 금		

2. 사업화 기술개요

기술 · 특허 및 제품명					
개 발 기 간		개발 비용		제품화여부	여(), 부()
개 발 방 법 (공동 출원여부)	단독(), 공동()				
권리자(소유권자)					
발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주소				

3. 기술(제품)용도 및 기능

기술(제품) 용도 및 기능(1)	- 관련 자료 포함 3장 내외로 기술

4. 시장 현황 및 효과

<p>시장현황 · 규모 및 특성</p>	
<p>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p>	
<p>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제품의 핵심기술과 보유여부 포함)</p>	
<p>기술의 파급효과 (적용범위 및 응용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계획한 제품 포함)</p>	
<p>기대효과 (매출증대,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p>	

5. 향후 추진계획(판매·연구 전략 및 계획 포함)

내 용	년도		년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6. 대학투입분 요청내역

구 분	요 청 내 용
시설사용 면적(m ²)	
비품 등	
연구기자재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및 Know-How 등	
참여인력 (연구원, 학생등)	
기타	

7. 소속부서의 업무공백 보완계획서

대상업무	보완계획
<p>담당하던 필수과목 강의계획</p>	
<p>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계획</p>	
<p>수행중인 연구 과제 계획</p>	

(서식 3)

교원창업 휴직 **승인 요청서**
 겸직

인적 사항	소 속		학부(과)	
	직위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년 월
	주 소		연 락 처	
창업 기업 개요	기업체명		참여(예정)직위	
	기업체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업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휴·겸직 기간	겸직 허가일로부터 3년간		
	사업내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산업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의2제1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상기 교육공무원의 교원창업 휴·겸직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 (인)

학부(과)장 : (인)

대학장 : (인)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겸 직 동 의 서

1. 겸직자

- 소 속 :
- 직위 및 직명 :
- 성 명 : (한문)
- 주민등록번호 :
- 전 공 분 야 :

2. 겸직내용

- 겸 직 기 관 :
- 직명 및 직급 :
- 겸 직 분 야 :
- 겸 직 기 간 : 겸직허가일로부터 3년간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겸 직 자 (인)

확인 : 대학장(인)

(서식 5)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5.>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사용·수익기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재산(증권)의 표시					비고 (물납허가일)
	종목명	법인등록번호	수량(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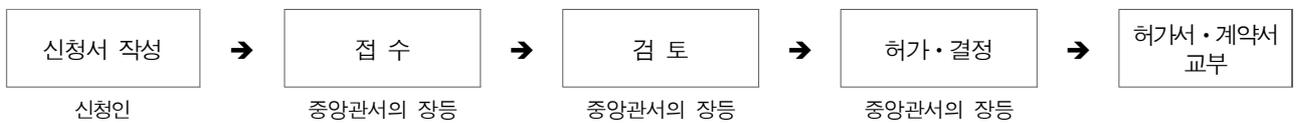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신청인 제출서류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 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 이사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 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 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p>※ 매수자가 미성년자 등 「민법」에 따른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매수 신청인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 1부(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매수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1부 	<p>수수료 없음</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1.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실험실공장 [] 설치 [] 변경 승인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실험실 개요	실험실명	소속
	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전화번호
	실험실 주소	

실험실 공장내용	실험실 총면적	m ²	생산시설면적	m ²
	제조시설명세			

사업계획	회사명	업종(산업분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생산 제품명	가동 예정일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생산시설면적(m ²)		
	제조시설명세		
	대표자 성명		
	업종		
	생산 제품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위와 같이 실험실 공장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승인조건:

년 월 일

소속 기관의 장

직인

교원창업협약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00학과 000교수(이하 '을'이라 한다)는 강원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창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을'은 강원대학교 교원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관련 활동을 하여야 하며, 교원창업규정 및 이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창업 관련 기술 제공) '갑'은 '을'의 교원창업 활동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기술이전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체결한다.

제3조(시설물 등의 이용) ① '을'은 학내에서 교원창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간사용에 대하여 대학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 외에 설비, 비품 등의 사용대가를 대학이 요구하거나 별도의 이용규정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을'은 허가 시설물 등의 이용기간 동안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사항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갖는다.

④ '을'은 허가 시설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청결유지와 화재 및 도난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화물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의 반입 제한, 출입의 관리 등에 있어 관련 부서 담당자의 통제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제2조 및 제3조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5조(실적보고) '을'은 창업기업의 연간 운영보고서(재무제표, 특허 출원 및 등록증 사본 등)를 교원창업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 ① '을'은 창업당시 등기부등본상의 발행 주식 5% 납부 또는 매년 매출액의 1%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1항은 선택사항입니다. 또는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으로 매출액의 1%로 협약이 체결됩니다.-제출 시 괄호 부분 삭제 및 검은색 변경 후 작성)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기간은 창업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8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창업규정에 의거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은 쌍방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갑’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길1

성 명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을’

주 소 : 개인 집 주소 또는 연구실 주소

성 명 : 00대학 00학과 000 (인)